

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

등 급			
각 분야별 평가 결과	물류센터 기능영역	점	백 분 을
	물류센터 기반영역	점	%
	합 계	점	
인 증 번 호			
물류창고명			
소재지 주소			

위 물류창고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에서 정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라 ○등급 스마트물류센터로 지정되었기에 「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인 증 기 관 의 장 직인